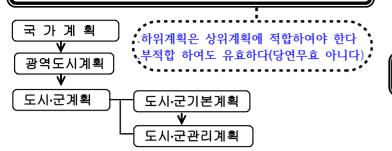
토지이용계획

도 시・군 기 본 계 획



- ① 도시장기발전방향 제시 종합계획
 - ② 도시.군관리계획 수립시 지침
 - ③ 구속력(x) → 행정쟁송 대상(x)
 - ④ 기본계획은 광역에 부합하여야 한다. 내용이 서로 다르면 광역이 우선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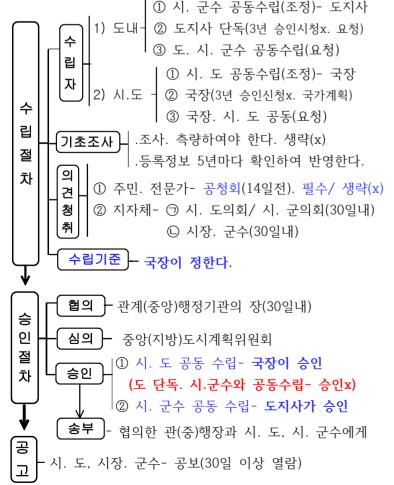
광 역 도 시 계 획

-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.

1. 광역계획권 지정

- 도시공간구조. 기능상호연계. 광역시설의 체계적인 정비
- ① 2이상 도시의 전부. 일부 대상으로 지정
 - 시. 도 걸친 경우: 국장 도안: 도지사 지정
- ② 지정(변경)요청: 중행장, 시.도지사, 시장.군수
- ③ 국장(시.도, 시.군수 의견듣고 중도위 심의거쳐 지정)
- ④ 도지사(중행장, 시.도. 시.군수 의견듣고 지도위 심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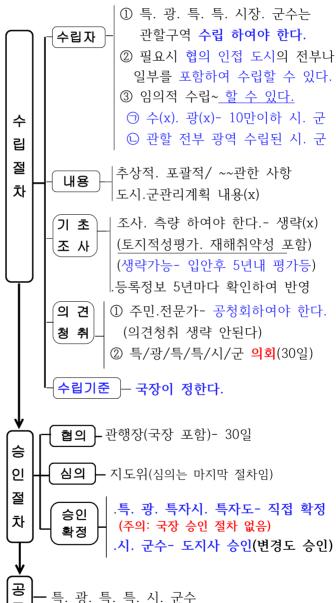
2. 수립 → 승인 절차



2. 수립→ 승인 절차

1. 의의

성격



3. 재검토 등

1) 타당성 검토- 5년(광역은 재검토 없다)

공보에 공고한다(30일 이상 열람)

2)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광역. 국가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1 -

도 • 군 과 김 계 회 시

1. 총 설

- 1) 성격 및 내용
- ① 구속적계획 →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.
- ② 광역. 기본에 부합(부적합해도 유효하다)
- ③ 내용: 용도지역. 지구/ 구역(개. 시. 수. 도. 입) / 기반시설/ 개발. 정비/ 지구단위/ 입지규제

♣. 시장.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

- ①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
- ②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

결정.고시 ├ 관보 또는 공보

3) 결정 효과

(2) 기득권

보호

(3) 재검토 ─ 5년마다

특. 광. 특. 특. 시. 군수- 열람기간 없다. (광역. 기본계획은 30일 이상 열람한다.) 랅

†(1) 효력발생 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(다음날- x)

계속할 수 있다.

① 진행중- 계속시행(허가. 신고- x)

② 시가. 수산 결정- 3월내 신고하고

2) 입안→ 결정 절차



안

제

안

인

아

절

차

결

정

절

차

- ① 특. 광. 특. 특. 시. 군수 ~한다.
- .2이상 걸친- 협의/협의(x)-지정(국.도)
- ② 국장(해장). 도지사 ~할 수 있다.
- 도시관리계획 도서. 설명서등 작성
- ① 주민(이해관계인 포함)- 도서, 설명서 첨부
- ② 기반. 지구. 산유개지구. 용도지구폐지 ③ 동의: 기반(4/5). 기타(2/3)↑-국공유지 제외
- ④ 산유제안: ① 1만m'이상 ~ 3만m'미만
 - ① 자녹. 계관. 생관 일 것
 - @ 전체면적의 50%이상이 계관 일 것
- ⑤ 45일 내 통보(1회 30일 연장)
- ⑥ 비용(협의)- 전부. 일부 부담가능

필수/ 환경. 적성. 재해포함/ 위반- 위법 기초초사 모두 생략가능..... 많다.

|① **주민- 공고**. **열람**(14일- 60일 통보) (의견청취 생략가능하다/ 전문가 없다) 의견청취

② 지방의회- 대령이 정한 사항(생략가능...)

수립기준 │ 국장이 정한다.

- 1. 지역. 지구. 구역
- 2. 광역시설
- 3. 기반시설

협의 - 관(중)행장- 30일

심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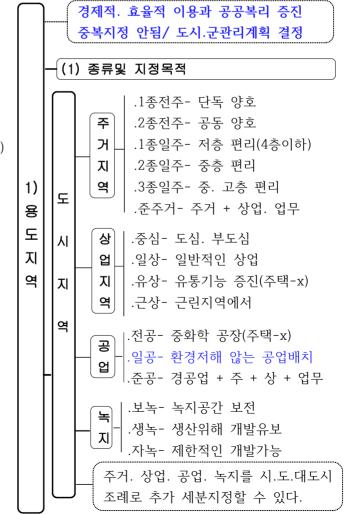
결정

- ① 국장(해장)- 중도위
- ② 시. 도/ 시장. 군수- 지도위 <u>.공동심의(건+도)</u>- ⑦ 지구단위계획
-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

협의. 심의 생략사항..... 많다.(가훈)

- ① 용도지역. 지구- 국, 시.도, 대도시
- ② 용도구역- ③ 개발제한- 국장
 - 도시자연- 시. 도. 대도시
 - ◎ 시가화- 시.도/ 국가계획- 국장
 - ② 수산- 해장 ◎ 입지- 결정권자
- ③ 기반시설- 국, 시.도, 대도시
- ④ 지구단위- 국, 시.도, 시장.군수

2. 도시·군관리계획의 내용



관리

.계획- 도시지역 편입예상

↑.생산- 농림지역 지정 관리곤란

.보전- 자연환경보전진역 지정 관리곤란

「자연┣ 자. 수. 해. 생. 상. 문. 수산

(2) 지정(변경. 세분) 절차

- 1) 원칙: 도시.군관리계획 결정절차에 의한다.
- 2) 특례

1)

용

지

여

(국장, 시.도, 대시장)

- ① 공유수면 매립지(매립목적- 이웃 용도지역과)
- @ 동일: 관리계획 결정절차 없이 이웃 용도지역 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 고시는 해야 한다.
- ⓑ 다른. 2이상 이웃: 도시.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의해 지정. 고시 하여야 한다.
- ② 도시지역의 결정. 고시로 본다.
- @ 도시지역에 연접한: 항만구역. 어항구역
- ⓑ 국가/일반/도첨산업단지(농공단지-x)
- © 택지개발지구
 - @ 전원개발사업구역. 예정구역
 - 도시개발구역(취락지구. 도시외의 지구단위-x)
- 도 ♣.구역. 단지. 지구등 해제되면 종전 용도지역등으로 환원한다(공사완료로 인한 해제- 환원하지 않는다.)
 - ③ 관리지역 안에서
 - @ 농업진흥지역- 농림지역 결정. 고시 본다.
 - ⓑ 보전산지- 농림 또는 자연환경 결정. 고시 본다.

(3) 지정효과

- 1) 건축제한(대령)- ① 허용 건축물 14개 지역 ○ 금지 건축물 7개(준주. 상업. 준공. 계관)
- ★ 아파트 건축 허용지역: 2종전주. 2종일주. 3종일주. 준주거. 중상. 일상. 근상. 준공업지역
- **2) 건폐율(건/대)** ① 기준: 주거(5.5.6.6.5.7) .상업(9.8.8.7) .공업(7.7.7) .녹지(2.2.2) .관리(4.2.2) .농림(2) .자연환경(2)
 - © 특례(3-자연녹지안의 개발진흥지구 /4- 개발진흥. 수산자원/6-자연**공**원. 취락지구 /**7- 농**공단지 /**8- 산**업단지)

3) 용적률(연/대)

- 기준: .주거(100. 150. 200. 250. 300. 500) .상업(1,500. 1,300. 1,100. 900) .공업(300. 350. 400) .녹지(100. 100. 80-보) .관리(100. 80. 80) .농림(80) .자연환경(80)
- © 특례(80- 수산/ 100- 개발. 공원/ 150- 농공)

- 4) 성장관리방안 수립된 경우(건폐율. 용적률)
 - ① 건폐율(계관 50% ↓ / 자녹. 생관 30% ↓)
 - ② 용적률(계관 125% ↓ 완화 가능함)

(4) 용도지역의 기타 제한

- 1) 미지정(자연환경). 미세분(도시-보녹). (관리-보관)
- 2) 도시지역안- 🗇 접도구역 적용하지 않는다.
 - 농취증 적용 안함. 단, 녹지안의 농지로서 도시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적용한다.

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. 완화/ 중복지정 가능함 도시.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
┫(1) 종류. 지정 목적. 세분

- ① 특정
- ② **보**호- 역사문화. 중요. 생태계
- ③ 방**하**

항. 공. 공용. 교. 군

- ④ 방**재** 시가지. 자연
- ⑤ 경관- 자연. 시가지. 특화
- ⑥ 고도
- ⑦ 개발- 주거/ 산업.유통/ 관휴/ 복합/ 특정
- (8) 복합
- 2) ⑨ 취락- 자연. 집단(개발제한구역의 취락정비)
- ※.시. 도. 대도시 조례 세분- **경**관. **중**요. 특정용 .시. 도. 대시장은 법령외 지구의 신설이 가능하다. .방재지구- ○ 연안침식으로 상당한 피해발생 도
 - (필수) 🗅 최근 10년내 2회 이상 재해로 인명피해

(2) 행위제한

지

- 1) 원칙: 이법. 타 법규정 외에는 도시.군계획조례 2) 예외(특례)
- ① 고도- 도시.군관리계획(고도리) 높이 초과금지
- ② 자연취락- 국계법시행령에 의한다.
- ③ 집단취락- 개특법 규정한다.
- ④ 개발진흥지구- 계획 수립여부
 - @ 수립한 경우- 수립된 계획에 의한다. -수립하기전 까지는 조례에 의한다.
 - (b) 수립하지 않는 경우- 용도지역을 적용한다.
- ⑤ 방화- 건축법(축하공연)
- ⑥ 기타- 도시.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
 - @ 보호지구- 할 수 있다.
 - ⓑ 기타 지구- 할 수 없다.

용 도 지 구

3)

용

도

구

역

3) 복합용도지구

.건축제한만 완화. 지역범위의 1/3이내 지정

- ① <u>일주</u>: 준주거 허용(안마. 관람장. 동식물 공장. 장례식장. 위험물은 <u>제외</u>)
- ② <u>일공</u>: 준공업 허용(노유자. 단<mark>란</mark>. 아<mark>파</mark>트. 안마시술소 제외)
- ③ <u>계관</u>: 숙박. 제과점. 유원시설(위락중). 휴게음. 일반음. 판매시설 추가 <u>허용</u>
- 4) 자연취락 허용(4층이하에서 조례로 별도가능)
 -단독. 1종근생. 2종근생(휴게. 일반. 제조업소. 단란. 안마 제외), 운동, 창고(농. 수. 축산용)
 동식물. 교정및 군사. 방송통신, 발전시설

.용도지역.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.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
/(1) 개발제한구역(<mark>국장</mark>)

- ① 국방장관 요청 보안상 도시 개발제한
- ② 지정절차. 행위제한: <u>따로 법률로 정한다</u> (개 특 법)

(2) 도시자연공원구역(시. 도. 대시장)

- ① 도시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개발 제한
- ② 지정절차. 행위제한: 따로 법률로 정한다 (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)

(성) 시가화조정구역(시. 도/ 국가계획- 국장)

- ① **5년이상 20년 이내**. 국, 시. 도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.
- ② 기간만료 다음날 실효, 실효고시 해야 한다. (국장- 관보, 시.도- 공보/ 안해도 실효된다.)
- ③ 행위제한(국계법령)
- 도시.군계획사업- 국방. 공익상 불가피→중행장 요청 → 국장이 인정한 것만 가능
- 비도시.군계획사업- 법정된 행위만
 허가받아 가능(허가 외는 모두 금지한다.)
 (공용. 국방, 주민생업, 문화재, 지하자원등)
 ✓ .시험에서는 허용되는 것을 묻는다.

(4) 수산자원보호구역(해장)

- ① 수산자원보호. 육성을 위해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를 포함하여 지정한다
- ② 행위제한등 수산자원관리법 적용한다.

(5) 입지규제최소구역(관리계획 결정권자)

- ① 도시지역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이 필요시
- ② 대상지역- 다음 지역의 전부, 일부
- 도심. 부도심등 생활권의 중심지역
- 기반시설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지역
- □ 세 개이상 노선 교차 결정지 1km 이내 지역
- ② 주거.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
- ◎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 (근린재생형-x)
- ③ 협의 요청받은 관행장은 10일내 의견제시
- ④ 다른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어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 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.
- ⑤ 배제할 수 있다.(주. 부. 복. 대. 미. 대)
 - 주택의 배치○ 부설주차장 설치
 - © 복리시설. 부**대**시설 설치기준
 - ② 미술작품 설치○ 대지조성기준
- ®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※. 기타의 행위제한

1. 개별법에 따른 행위제한

(도시계획시설은 지역, 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 안한다.)

- 1) 농공단지: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
- 2) 농림지역중 ① 농업진흥지역(농지법)
 - ② 보전산지(산지관리법) ③ 초지(초지법)
- 3) 자연환경보전지역중
 - ① 공원구역(자연공원법)
 - ② 상수원보호구역(수도법)
 - ③ 지정문화재. 천연기념물보호구역(문화재보호법)
 - ④ 해양보호구역(해양생태계.....법)
 - ⑤ 수산자원보호구역(수산자원관리법)

2.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친 경우

- 1) 원칙: 330㎡이하 부분(도로 띠 상업 660㎡ ↓)
 - ① 건폐율. 용적률- 가중평균 적용
 - ② 건축제한 등- 가장 넓은 면적 지역등 적용
- 2) <u>건축물</u>이 고도에 걸친 경우 -대지. 건축물 모두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한다.
- 3)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
 - ①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.
 - ② 경계를 방화벽 구획하면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도 구 역

용

- 4 -

④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- 각 각 적용 (가장 적은 부분이 녹지로서 330㎡이하는 제외) 단,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. 방화에 걸친 경우 -고도.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.

(1) 의의 및 종류

- 1) 기반시설- 개념 없음(세분: 도. 광. 자~^^)
- 2) 종류
 - 교통시설- 교통. 자동차관련시설(폐차장- x)
 - ① 공간시설- 공원. 광장. 녹지, 공공공지등
 - ◎ 유통.공급- 전기. 수도. 공동구. 시장
 - ② 공공문화체육- 학교. 청소년수련시설
 - ◎ 방재시설- 하천. 유수지. 저수지. 재해예방
 - ⊎ 보건위생- 장사시설. 도축장. 종합의료시설
 - ⊘ 환경기초시설- 하수도. 재활용시설. 폐차장
- 3) 도시.군계획시설- 기반시설중 도시.군관리계획 으로 결정된 시설
- 4) 도시.군계획시설사업- <u>도시.군계획시설을</u> 설치. 정비. 개량하는 사업이다. (기반시설을-x)

(2) 설치 및 관리 등

1) 설치

4)

IJ

λІ

설

① 원칙: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한다.

② 예외: 000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.(눈치)

2) 공동구

- ① 설치 의무자: 개발사업 시행자(200만㎡ 초과)
- ② 대상지역: 도시개발구역, 정비구역,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, 공공주택지구, 도청이전신도시
- ③ 설치비용: 시행자와 점용예정자가 함께 부담
- ④ 공동구 설치된 경우 빠짐없이 수용해야 한다.
- ⑤ 하수도관. 가스관은 심의 거쳐 수용(심의 하까?)
- ⑥ 점용. 사용허가바고/ 사용료 납부해야 한다.
- ⑦ 관리(특. 광. 특. 특. 시. 군수가 한다.)
- 비용(점용면적고려 관리자가 정함- 연2회 분납)
- 유지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.
- © 1년 1회이상 안전점검 실시한다.

3) 광역시설 설치. 관리

- ① 원칙: 일반적인 도시.군계획시설 규정을 준용
- ② 예외: ③ 특. 광. 특. 틱. 시. 군수가 할 수 있다.
 - 시장. 군수 협의 안되면 도지사가 할 수 있다.
 - 국가계획인 경우 법인 설립하여 할 수 있다.

(3) 도시.군게획사업 시행 절차

① 수립자

단

계

별

집

행

계

획

- ⊙ 특. 광. 특. 특. 시. 군 수립하여야 한다.
- ① 국장.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.
- ② 시기: 🗇 결정. 고시 3개월내
 - ① 타법에서 관리계획결정 의제되면 2년내 (기간내 수립 안해도 실효 안된다. 행위제한이 완화 되는 효과가 있다.)
- ③ 구분: 3년이내 시행은 1단계, 3년후 시행은 2단계로 구분한다.
 - (매년 2단계를 검토하여 3년이내 시행할 시설을 1단계에 포함시킬수 있다.)
- ④ 관행장과 **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** 후 수립해서 **공보에 공고** 한다.
 - #. 기초. 주민의견. 심의. 승인 절차 없다.

1) 시행자: ① 원칙: 특. 광. 특. 특. 시. 군수 ② 2이상 도시에 걸치면 협의하다.

- © 협의 안되면 국장. 도지사가 정한다.
- ② 예외: 국장. 도지사. 비행정청 -비행정청은 국, 시.도, 시.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.
- **.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시 면(2/3)소유 + 수(1/2)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2) 행정심판(행정심판법),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한다.
- 3) 실시계획 작성
- ① 실시계획에는이 포함된다.(가훈)
- ② 2 이상 분할시행이 가능하고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.
- 4) 인가: 국장. 시. 도지사, 대시장(변경: 변경인가/ 경미한 변경은 제외- 눈치)
- 5) 의견청취: 14일 이상 열람
- 6) 조건부 인가 가능(이행보증금)- 굴비발차기 (국. 지자체. 공기. 공단은 예치 안한다.)
- 7) 의제사항:..... 많음(눈치)
- 8) 시행자 보호조치
- ① 관계 서류 무료 열람할 수 있다.
- ② 이해관계인 주소등 불분명시 공시 송달할수 있다.
- ③ 국. 공유지는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.(위반시 무효)

4)

기

바

시

설

계 획 인 가 . 고

시

실

λГ

실 시 계 획

인 가 · 고 시

- ④ 수용 및 사용
-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는 수용.사용할 수 있다.
- © **인접한 토지** 등은 **일시 사용할 수 있다.** (일시 수용은 안 된다)
- © 수용. 사용에 대해 이 법 규정 외에는 공 취 법을 준용한다.
 - ④ 실시계획 고시를 공취법상 사업인정.고시로 본다.
 - ⑤ 재결신청은 시행기간 내에 해야 한다.
- ⑤ 타인 토지 출입 등
- ① 출입: ⓐ 허가 받는다. (행정청은 허가 안 받는다).
 - ⓑ 7일전 통지해야 한다.
 - ⓒ 야간 출입시 점유자 승낙을 요한다.
- © 일시사용, 장애물 제거. 변경
- @ 점유자등 동의를 받는다.
 - ⑤ 동의 곤란시 행정청은 통지하고 비행정청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ⓒ 3일전에 통지한다.
- © 손실보상은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한다.

(주의: 행위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.)

② 위반시 1천만 이하 과태료 처벌사유이다.

준공 검사

의제사항: 타 법에 의한 각종 검사 등은 받은 것으로 본다.

검사

Ш

용

부

담

- ①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다.
- ② 국장이 시행하여 이익받은 시.도, 시.군에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.(행장과 협의 한다)
- ③ 시.도는 이익받은 시.도, 시.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. 협의하되 안되면 행장이 정한다.
- ④ 시.군는 이익받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부담 시킬수 있다. 협의 안되면 도안은 도지사가 다른 시도에 걸치면 행장이 결정한다.
- ⑤ 행정청이 시행하는 사업은 50퍼센트 이하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. 융자할 수 있으며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비용의 3분의 1 범위에서 국가. 지자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.

(4)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

- 1)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
- ① 10년내 미설치하고 지목이 대(垈)인 토지 소유자 (실시계획인가나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시는 제외)
- ② 상대방(시행자)
- ⊙ 원칙: 특. 광. 특. 복. 시. 군수에게 할 수 있다.
- ① 예외: @ 시행자 지정된 경우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.
 - ⓑ 설치. 관리 의무자 있으며 그 자에게 할 수 있다.
- ③ 6월내 결정하여 소유자와 특광특특시군에 통보한다. → 매수결정 통보하면 2년내 매수하여야 한다.
- ④ 거부 or 2년내 매수안하면 <u>허가받아</u> 개발할 수 있다.
 - 3층이하 단독주택(단독)
 - © 3층이하 1종근생. 2종근생. 다만(<u>노래</u>연습장. <u>안</u>마시술소. <u>단</u>란주점. <u>다</u>중주택은 제외한다)
 - ◎ 공작물
- (5) 대금 지급은 ① 원칙: 현금으로 지급한다.
 - 예외: 도시계획시설채권(지자체만 발행한다)
 - @ 원할 때/ 부재. 비업무용- 3천만 초과 금액만
 - ⓑ 상환기간은 10년 이내, 이자율은 조례로 정한다
 - ⓒ 발행절차 등 이 법외에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
 - ⑥ 매수가격. 절차 등 이 법외에는 공취법 적용한다.

시 2) 시설 결정 실효

섴

IJ

바

- ① 20년내 설치안되면 다음날 해제된다.(고시해야 한다)
- ② 10년이후에 실시계획 작성(인가). 고시- 5년내 재결 신청 안하면 5년 되는 다음날 실시계획이 실효된다. 다만, ③ 시행자가 5년 지나기 전에 면적 2/3이상 소유 또는 확보하고 7년내 재결신청 안하면 7년 지난 다음날 실시계획은 실효된다.
 - © 재결신청 없이 시행자가 모든 소유권확보 또는 사용권원 확보하면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.
 - © 실시계획이 폐지. 효력을 잃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<u>다음에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</u>. (고시하여야 한다.)
 - ②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,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: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
 - ⑤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 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: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

3) 해제 권고

기

반

시

(국장 결정하고 중행장 설치하는 것은 제외)

- ① 설치 필요성 없거나 10년내 설치 안된 경우
- ② 특. 광. 특. 특. 시장. 군수는 지방의회에 보고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90일내 해제 권고한다.
- ④ 지자체장은 1년내 해제 결정.고시한다.
- ⑤ 시. 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하면 도지사는 1년내 해제 결정. 고시해야 한다.
- ⑥ 해제해서 안된 경우에는 6월내 사유소명한다
- ⑦ 해제 안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.

4) 해제 입안 신청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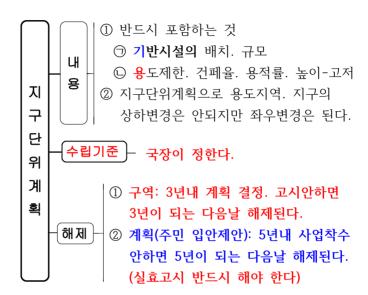
- -10년내 미설치 + 실효시기까지 집행계획(x)
- ① 해제 입안신청(소유자→ 입안자) -3월내 결정 통지(6월내 해제결정)
- ② 해제 결정신청(결정권자): 2월내 결과통보 -6월내 해제하여야 한다.
- ③ 해제 심사신청(국장): 심의 거쳐 해제 권고 -결정권자는 6월내 해제하여야 한다.

도 시 지 역 외 기 구 단 위 계 획 구 역

2) 개발진흥지구 + <u>대령 요건</u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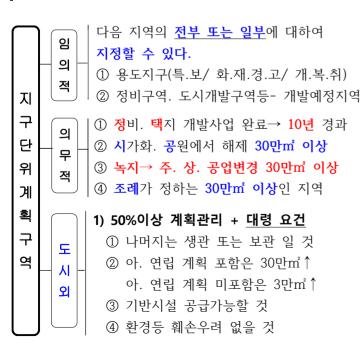
위 1)의 ②. ③. ④를 충족하고

- ① 주/ 복/ 특- 계획관리지역 일 것
- ② 산/ 복- 계획. 생산. 농림일 것
- ③ 관 도시지역 외일 것
- 3)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하려는 지역



5)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

- 1)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.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수립한다.
- 2)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은 국, 시.도, 시장.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


1) 완화규정

규

제

완

화

- ① 국계법- 건축제한/ 건폐율/ 용적률
- ② 건축법- 조경/ 공개공지/ 대지와 도로관계/ 높이제한/ 일조높이제한
- ③ 주차장법- 주차장설치/ 설치계획서 (대지분할제한. 대지안의 공지. 건축선- x)
- 2) 도시지역 안 완화기준
- ① 주차장(100%): 한옥마을 보전. 차 없는 거리
- ② 용적률(120%): 도시 + 개발진흥 + 지구단위
- ③ 높이제한(120%): 도시 + 개발진흥 + 지구단위
- ④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 한도: 건(150%). 용(200%)를 각 각 초과할 수 없다.
- 3) 도시지역 밖에서 완화
- ① 도시외 지구단위에서 건축물 용도. 종류. 규모등을 완화적용할 수 있다.
- ② 개발진흥지구(계획관리는 제외)에 지정된 지구단위에서는 아파트. 연립은 안된다.
- ③ 건폐율(150%). 용적률(200%) 완화 적용할 수 있다.

- 7 -

개

발

햇

위

허

가

절

자

등

개발에 관한 부분

- 1. 개발행위 종류- 건, 공, 토. 토. 토. 물
- 2. 성격에 따른 분류
- 1) 도시계획사업: 허가 안 받는다.
 - 도시계획시설사업(국계법): 실시계획인가
 - 도시개발사업(개발법): 실시계획인가
 - ◎ 정비사업(도정법): 사업시행인가
- 2) 비도시계획사업: 개발행위허가 받는다.

1. 허가를 요하는 개발행위

- ① 건축물의 건축
- ② 공작물의 설치
- ③ 토지 형질변경- 절. 성. 정. 포장/ 매립
- 인접토지의 관개 ·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
- ①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
- ◎ 지목변경 수반하는 경우
- 단, 전, 답 상호간 변경은 허가안 받는다.
- ② 허가대상인 옹벽설치 또는 2m이상 절토. 성토. 수반되는 경우
- ④ 토석채취

개

행

위

허

- ⑤ 토지분할(건축물이 없는 토지분할)
- ⑥ 물건 적치: <u>녹지. 관리. 자연안에서 1월이상</u> 적치(농림지역은 허가 대상 아니다)

2. 허가를 요하지 않는 개발행위

- ① 도시.군계획사업인 개발
- ② 재해복구. 재난수습: 1월내 신고
- ③ 건축허가.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건축
- ④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(육상어류양식장은 허가를 받는다.)
- - 조성 완료된 대지에 건축. 공작물 설치
 - ① 국가. 지자체가 공익상 직접 시행
- ⑥ 토지분할: ⑦ 사도개설 허가 받은
 - ① 토지일부를 공공용지. 공용지로 하기 위한
 - ◎ 행정재산 용도폐지. 일반재산을 매각. 교환
 - ② 토지일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
- ♣. 경미한 변경은 허가를 안 받는다.
- ① 사업기간 단축(연장은 허가 받는다)

1. **처분:** 신청후 15일내 처분한다.

2. 의.청- ①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의견들어야 한다.

②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들어야 한다.

.8. 허가기준

1) 형질변경 면적이 적정할 것

① 주. 상. 자녹. 생녹: 1만mi미만

② 공업: 3만m'미만

③ 보녹: 5천m'미만

④ 관리. 농림: 3만. 3만m²미만

⑤ 자연환경: 5천㎡미만

-관리. 농림은 3만m'미만에서 조례로 정한다.

♣ 2이상 용도지역 걸치면- 각 각 지역 적용한다.

-총 면적이 큰 지역 면적을 초과하면 안된다.

2) 도시.군관리계획, 성장관리방안에 적합할 것

3) 도시.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

4) 주변환경. 경관과 조화 이룰 것

5) 기반시설. 용지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

♣.자금조달계획은 허가기준 아니다.

4. 허가의 세부기준

- ① 시가화용도: 주. 상. 공업(허가기준 적용)
- ② 유보용도: 계관. 자녹. 생관

-심의 거쳐 허가기준 강화. 완화적용할 수 있다.

③ 보전용도: 생녹, 보녹, 보관, 농림, 자연

-심의 거쳐 허가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.

¹5. 성장관리방안(난개발 방지)

- ① 개발 가능성 높은 유보용도, 보전용도가 대상이다 (시가화용도인 주거. 상업. 공업지역은 제외한다.)
- ② 수립절차: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- 협의- 심의 - 고시(**절차가 다 있다**)
- ③ 기반시설 배치. 규모와 건축물 용도제한. 건폐율. 용적률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
<u>6. 조건부 허가</u>

- ① 조경 등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. (허가신청자 의견청취 하여야 한다.)
- ②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.
- ⊙ 사유:(굴. 비. 발. 차. 기)

-굴착. 비탈면조경. 발파. 차량통행. 기반시설 설치

① 국. 지자체. 공공기관. 공공단체는 예치안한다.

가

⑤ 형질변경

② 면적 5%이내 축소(확대는 허가 받는다.)

7.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

- 1) 심의 사항 많음
- 2) 생략 사항도 많다(눈치와 가훈)
 - ① 지구단위계획,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심의 안한다.
 - ②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는 심의 안한다.
 - . . . 개발행위는 심의 한다? 심의 안한다?

8.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

- (1) 국, 시.도, 시. 군→ 심의→ 지정. 고시 (국, 시.도는 시장, 군수 의견청취하고 심의)
- 2) 제한사유- 도시.군관리계획상 필요
- ① 녹지. 계관- 수목. 조수. 유량농지(3년)
- ② 환경. 경관. 문화재 훼손우려(3년)
- ③ 기본. 관리계획 수립(3년+연장 2년/ 최장5년)
- ④ 지구~구역 지정(3년+연장 2년/ 최장5년)
- ⑤ 기반~구역 지정(3년+연장 2년/ 최장5년)
 - ●. 주의: 연장할 때는 심의 안한다.
- ③) 해제: 기간내라도 사유소멸하면 해제해야 한다

9. 개발행위 <u>허가로 인한 의제사항</u>

- ①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타 법의 인. 허가 등 받은 것으로 본다.(...많다)
- ② 관행장과 협의하기 때문이다.(협의기간 20일)

10. 위반시 조치

- ① 원상회복명할 수 있다. 불응시 대집행 가능
- ②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이행보증금 사용가능

11. 준공검사

- ① 건축. 공작물. 형질변경, 토석채취 만 (토지분할과 물건적치는 준공검사 안한다)
- ② 건축물은 건축법 사용승인 받으면 이 법 준공검사 안 받는다.
- ③ 이 법 준공검사 받으면 타 법 준공검사등 .받은 것으로 본다(미리 협의하기 때문)

. 개발밀도관리구역

- 1) 주거. 상업. 공업에서 특. 광. 특. 특. 시. 군수 → 심의→ 지정. 고시 (주민 의견청취 없다.)
- 2) 구역 명칭. 구역 범위/ 건폐율. 용적률 강화범위 변경도 심의한다.(심의 생략 없다)
- 3) 지정기준: 국장이 정한다(2년이내. 20%이상)
- 4) 효과: 건폐율 또는 용적률 대령 범위내 강화한다 (용적률 50% 범위내 강화한다.)

◉. 기반시설부담구역

-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 안된다.

1.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

-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외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 (대학은 제외한다)
- ② 특. 광. 특. 특. 시. 군수- 지정하여야 한다.
 - 행위제한 완화. 해제되는 지역
 - ① 개발건수가 20%이상. 인구 20%이상 증가
- ③ 지정기준: 국장(최소 10만㎡ 이상)
- ④ 절차: <u>주민 의견청취</u>→ 심의→ 지정. 고시

2. 기반시설 설치계획

- ① 수립절차: **주민 의견청취**→ 심의→ 수립. 고시
- ②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.
- ③ 구역 지정하고 1년내 수립 안하면 다음날 해제 (기 원 합니다~~^*^)

3.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

- ① 200㎡(기존면적 포함)초과 신축. 증축 (철거 후 신축시 기존 면적 초과만 부과대상)
- ② 납부의무자: 건축행위 하는 자
- ③ 예정통지: 30일→ 15일→ 15일
- ④ 부과 및 납부
 - 허가후 2월내 부과
 - ①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
 - ◎ 원칙(현금. 카드). 예외(토지로 물납 가능하다)
 - ② 신청- 연기(1년). 분할납부(2년)
 - ♣.민간부담률: 100분의 20으로 하며,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 가능

4. 설치비용의 운용. 관리

- ① 관리: 구역별로 특별회계 설치한다.
- ② 운용: ③ 해당 구역에 사용한다.
 - ① 집행 잔액: 연계되는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

♣. 공공시설의 귀속

- 1. 신설- 관리청 무상귀속
- 2. 기존(종전)- ① 행정청: 무상귀속
 - ② 비행정청: 설치비용 범위내 무상양도 가능하다

★. 청문 사유

- -사적주체에게 피해를 주는 취소. 말소처분시 한다.
- 1. 개발행위 허가 취소
- 2. 실시계획 인가 취소
- 3.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취소

개

발

행

위

허

가

절

ᆉ

등

치

도 시 개 발 법

- 1. 수립: ① 원칙: 지정권자 구역 지정시 수립한다.
- ② 예외: 구역 지정후 수립할 수 있다.
 - ① 개발계획 공모 ② 자녹. 생녹(30%↓)
- © 도시외- 관리(계관. 생관. 보관). 농림. 자연환경
- ⓐ 국가균형발전(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)
- ◎ 주. 상. 공 면적 합계가 전체면적의 30%이하
- 2. 변경: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요청받아 할 수 있다.
- 3. 내용: ①...많다. 지구단위계획 제외하고 다 있다.
- ② 순. 대. 사. 기는 구역 지정후에 포함할 수 있다.
- (<u>순</u>환개발, 생활안정<mark>대</mark>책, 수용사용, 밖 기반시설설치)
- 4. 환지방식 동의기준: 시행자가 <u>국. 지자체</u>인 경우를 제외하고 <u>면적(2/3)와 총 수(1/2)</u>동의받아야 한다. .변경도 동의 받음. 경미한 변경은 안받음(...눈치)
- 5. 복합기능 갖는 도시(자족도시): 330만㎡이상
- 6. 개발계획은 광역.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한다.
- 7. 수립기준: 국장이 정한다.

.'♣ 동의자 수 산정방법

- 1. 면적산정시 **국.공유지 포함(개~포^^)**
- 공유토지는 대표공유자 1인, 집합건물이면 구분소유자 별로 각 1인
- 3. 공람공고후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 공람공고일 전 기준으로 산정한다.
- 4. ~~전에 동의 철회할 수 있다.
- 5. ~~ 소유자 변경- 변경전 소유자 기준으로 산정 6. 사유토지 동의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. 공유지

1. 지정권자 등

- (1) 지정권자
- 1) 원칙: 시. 도지사. 대도시시장
 - ① 직접: 계획적 개발 필요시
 - ②둘 이상 시. 도 대도시 걸친: 협의하여 지정 할 자를 한다.(협의 안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)
- 2) 예외: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.
 - 중. 국. 정부, 긴급. 협의
 - ① 중행장(장관)이 요청(제안-x)
 - ② 국가가 개발
 - ③ 정부출연. 공공기관장 30만㎡이상 제안 (지방공사는 국장에게 지정제안 못함)
 - ④ 천재지변등 긴급히 시행
 - ⑤ 시.도. 대도시시장간 협의가 안될 때

2) 지정요청

- ① 시(대도시제외). 군. 구는 시. 도지사에게 요청
- ② 중행장(각부 장관)은 국장에게 요청
- 3) 지정제안 ① <u>국. 지자체. 조합을 제외한</u>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특도, 시,군.구에 제안할 수 있다
 - ② 2이상 시. 군. 구 걸친 경우- 큰 지역에 걸친
- ③ 민간시행자 제안: 면적 2/3이상 동의요함
- ④ 제안받고 1월내 결정 통보(1월 연장가능)
- ⑤ 비용: 협의하여 전부. 일부 부담할 수 있다.

2. 지정절차

기초조사→ 의견청취→ 협의→ 심의→ 지정.고시

- ① 기초조사: 임의적(할 수 있다)
- ② 의견청취: 공람 또는 공청회
- ③ 공고(신문과 홈피/ 10만㎡ 미만은 공보와 홈피)
- © 100만m²이상: 공람후 공청회개최 하여야 한다.
- ③ 면적 100만㎡이상 이면 국장과 협의한다.
- 3. **대상지역**(면적)등

두

시

개

발

옄

- ① 도시안 ⑦ 주. 상. 자녹. 생녹- 1만㎡이상
 - © 공업- 3만m'이상
- ② 도시외: ① 원칙: 30만m'이상
 - ① 예외: 아파트. 연립 포함~ 10만m'이상

4. 구역의 분할과 결합

- ① 분할: 효율적인 추진위해 필요시 각 각 1만㎡ 이상
- ② **결합**: 경관보호 필요시(하나라도 1만㎡이상이 포함)
- 5. 구역 지정 효과
- 1)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로 본다. 다만 취락지구와 도시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
- 2) 개발행위 허가를 요함(건, 물. 토. 토. 토. 죽)
 - ① 건축(가설. 대수선. 용도변경) ↔
 - ② 공작물 설치 ↔ 농수산물 생산이용 간이공작물
 - ③ 형질변경 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
 - ④ 토석채취 ↔ 자연훼손 않는 토.취
 - ⑤ 토지분할 ↔
 - ⑥ 물건적치(1월이상) ↔ 남겨둔 대지에 물건적치
 - ⑦ 죽목의 벌채. 식재 ↔ 관상용 죽목 임시식재 (경작지에서 식재는 허가를 받는다.)

.재해복구. 재난수습 응급조치 허가 안 받는다.

- @ 진행중 사업은 30일내 신고하고 계속한다.
- ⑤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.
- ⓒ 시행자 의견청취 하여야 한다.

도시개발구역

λІ

개

발

사

업

의

계

횓

개

계

힐

도시개발구역

6. 구역 해제의제- 다음날 (3실 2개 5330)

- ① 구역 지정. 고시후 3년내 실시인가신청(x)
- ② 공사완료 공고(환지방식- 환지처분 공고)
- ③ 구역 지정. 고시 2년내 개발계획 수립.고시(x)
- ④ 개발계획 수립. 고시후 3년내 실시계획인가 신청(x) 단, ③. ④는 330만㎡이상- 5년 .<u>해제</u>: 용도지역 환원. 지구단위 폐지된다.

(단, ②의 해제는 그러하지 않음)

1. 시행자(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.)

- ① 국. 지자체
- ② 공공기관(토공. 수공. 농공, 관공, 철공)
- ③ 정부출연기관
- ④ 지방공사

여기까지 공공시행자

- ⑤ 토지소유자
- ⑥ 조합(전부 환지방식인 경우) 등 ~⑩
- -②, ③은 국장에게 구역 지정제안이 가능하지만 ④는 국장에게 구역 지정제안을 할 수 없고 특도. 시. 군.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.
- -전부 환지방식은 소유자.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.

2. 시행자 변경

- ① 실시계획 인가받고 2년내 미착수
- ② 구역지정 고시후 1년내 실시계획 인가신청(x)
- ③ 시행자 지정 취소, 실시계획인가 취소
- ④ 시행자 부도. 파산 목적달성 어려움

3. 조합

1) 설립

① 토지소유자 7인 이상, 지정권자 인가받는다. 변경시 변경인가 받는다.

(단,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. 공고방법 변경은 신고 한다.)

- ② 동의: 면적(2/3)와 소유자 총수(1/2)
 - 국공유지 포함
 - ① 수인이 공유하면 대표자 1명.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자별로 각 각 1명
 - ◎ 공람 공고 후 분할하여 증가- 공고 전 기준
 - ② 사유 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지 받음
 - ◎ 조합설립인가 신청전 동의철회 가능하다.
 - 📵 동의한 자에게 취득하면 동의승계 된다.
- 2) 성격: 법인/ 30일내 등기- 등기하면 성립한다. 이 법 외 민법중 사단법인 준용하다.

3) 구성

- ① 조합원- ③ 토지소유자(동의 불문)
 - © 면적관계 없는 평등한 의결권, 공유는 1인으로 하되 집합 건물은 구분소유자별로 각 1인
 - © 공람. 공고후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유권 취득한 자는 의결권 없다.

② 임원

- 조합장: 조합을 대표. 총회. 대의원회 등 의장
- ① 이상: 조합장 보좌. 조합 사무를 분장한다.
- ◎ 감사: 조합사무 및 재산. 회계에 관한 사항 감사
-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, 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◎ 조합장.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.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.
- ⊌ 임원은 그 조합, 다른 도시개발조합의 임원.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- ②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<u>다음날</u> 자격 상실한다. (임원의 결격사유는 있어도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없다.)
- ③ 대의원회

λΙ

계

ρI

가

고

λΙ

- ①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가 50인 이상 둘 수 있다.
- ① 총회 권한 대행 못 한 것- 개. 임. 환. 정. 해
- ⓐ 개발계획수립. 변경 ⓑ 임원선출(조. 이. 감)
- ♣참고(행정심판): ① 행정청은 행정심판법에 의한다.
 - ② 비행정청(특히 조합)은 지정권자에게 한다.

5. 사업 대행

- 1) 공공시행자는 주택건설업자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. (사업대행 시행사는 경쟁입찰 방식 선정)
- 2) 대행 업무(
-)
- ① 실시**설계** ② **부지**조성공사
- ③ 기반시설공사 ④ 조성된 토지분양
- 6. 실시계획인가(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.)
- 1) 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**지구단위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**.
- 2) 의견청취: ① **국장은 시. 도. 대시장 의견을 듣고** ② 시. 도는 시. 군. 구청장 의견을 듣는다.
- 3) 효과-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.고시된 본다.
 - @ 실시계획 작성= 지구단위계획 작성
 - ⑤ 실시계획 고시= 지구단위계획 결정.고시
 - ②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종전 결정은 고시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.
- ③ 의제사항:많다(협의기간 20일)

실

계

힐

수

용

사

용

밧

식

화

지

식

시 행 방 식 1. 수용. 사용: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필요

2. 환지: 대지로서 효용증진/ 토지의 교환. 분합/ 지가 높아- 수용. 사용이 곤란

3. 혼용방식: 분할/ 미분할 시행<u>할 수 있다.</u>

1. 수용. 사용

-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필요시 수.사할 수 있다.
- ② <u>민간시행자는</u> 면(2/3)소유하고 총수(1/2)이상 동의를 받아야 수용 사용할 수 있다.
- ③ 이법 규정 외는 공~취~법을 준용한다.
- ④ 세부목록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.

2. 토지상환채권

- ① 소유자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지급하기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발행할 수 있다.
- ② 1/2초과 해서는 안된다.
- ③ 민간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받아야 한다.
- ④ 발행계획 작성하여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한다.
- ⑤ 기명증권이다. 양도가능하며 취득자는 명의변경 하여야 대항력을 갖는다.
- ⑥ 이율: 발행자가 정한다./ 질권 설정 가능하다.

3. 선수금

- ① **지정권자 승인 받아** 대금의 **전부**. **일부**를 받을 수 있다.
- ② 공공시행자는 소유권 10% 확보해야 한다.
- ③ 민간시행자는 소유권 확보하고 저당권말소하고 공사진척률이 10%이상 진행되어야 한다.

4. 원형지 공급

- ① 지정권자 승인받음,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.
- ② 전체 면적 1/3이내 공급가능하다.
- ③ 원형지는 10년 이내에서 대령이 정한 기간동안 매각 안된다. ⑤ 공사완료 5년
 - ① 계약체결 10년 중 빠른 날 매각 가능하다. 다만, 국가. 지자체/ 이주용 주택용지. 공공용지등 지정권자 승인 받으면 매각이 가능하다.
- ④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- 학교. 공장용지는 경쟁입찰 (2회이상 유찰시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.)
- ⑤ 공급가격= (감정가격 + 기반시설 공사비) + 협의
- ⑥ 공급계약 해제하는 경우 2회이상 시정요구 한다.

5. 조성 토지 공급

1) 공급계획서-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.(인가-x)

|2) 조성토지 가격평가

- ① 감정가격(산술평균가격)으로 한다.
- ② 감정가격이하로 정할 수 있다.
 - -학교. 폐기물처리시설 .사회복지시설(무료시설)
 - -공장(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소유자가 설치)
 - -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(공공시행자가 공급)
 - -호텔업(공공시행자 공급 200실 이상).
 - -이주단지 조성 .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장등

3) 공급기준

- ①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한다.
- ② 기반시설 원활설치 필요시 공급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.

4) 공급방법

- ① 원칙: 경쟁 입찰
- ② 예외
 - 추첨방식- 공. 주. 단
 - ⓐ <mark>공</mark>공택지. 공장용지
 - ⓑ 국민주택규모의 **주**택건설용지
 - © 330㎡이하의 단독주택용지
 - ♣ 수의계약 공급하렸으나 신청량이 공급계획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방법에 따른다.
 - ① 수의계약:많다.
- 1. 내용(환지방식 시행하는 모든 시행자 작성)
- ① 환지설계
- ② 필지별 환지명세
- ③ 필지별, 권리별 청산대상 토지명세
- ④ 체비지. 보류지 명세
- ⑤ 입체환지 계획~
- -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, 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.

2. 작성기준

1) 원칙: 적응환지

위치. 지목. 면적. 토질. 수리. 이용상황. 환경

- 2) 예외
- ① 부지정
 - 동의. 신청(임차권자등 동의 받아야 한다.)
 - ① 과소 토지 발생방지 위해 직권 부지정
- ② 조정: 증환지. 감환지 할 수 있다.
- ③ <u>입체환지(소유자 신청</u>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.)

수 용 · 사

방 식

용

= - 12 -